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4. 23.(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3.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 되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존치 이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5. 검토의견

가. 조례 폐지 이유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청구의 방법 등이 변경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했던 사항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도록 변경되고 주민 조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이 「충청북도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제정됨.
- 따라서 기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새로운 법률안 제정으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